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-----------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용어의 정의)----- ----- | 제2조(개정안과 같음) |
| 1. <u>폐기물</u> 이라 함은 부산광역시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. | 1. 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”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 | |
| 2. (생략) | 2. (현행과 같음) | |
| <신설> | 3. “건설폐기물”이라 함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, 토목공사(철거·보수공사 포함)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 | |
| <신설> | 4.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 | |
| <신설> | 5. “생활폐기물”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 | |
| 제4조(폐기물의 분리보관)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<u>재활용 가능폐기물</u> 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| 제4조(폐기물의 분리보관) ①----- ----- <u>재활용 가능폐기물</u> , 가연성폐기물, 불연성폐기물----- ----- ----- | 제4조(개정안과 같음) |
| 제6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(이하 “쓰레기봉투”라 한다)에 담아 둑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. | 제6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| 제6조(개정안과 같음) |
| 1-3(생략) | 1-3(현행과 같음) | |
| 4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| 4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배출 폐기물 |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|
| <p>5~6(생략)</p> <p>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<u>배출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5~6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스스로 간락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</p> | |
| 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,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등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·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·배포하는 등 -----</p> | |
|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<u>법 제17조의</u> 규정에 의한 수집·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을 반하였을 경우에는 <u>법 제19조의</u>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,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·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 <u>법 제26조의</u> -----</p> <p>----- <u>법 제28조, 법 제29조</u> -----</p> | |
| <p>제9조(쓰레기 봉투의 용도·색상등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얇은 청색, 공공용봉투는 회색으로 한다.</p> | <p>제9조(쓰레기 봉투의 용도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| <p>제9조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(쓰레기봉투의 제작) ① (생략)</p> <p>② 봉투의 규격,사양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</p> <p><신설></p> | <p>제10조(쓰레기봉투의 제작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봉투의 규격, 색상 등은 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③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 봉투에 산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단,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0조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p> <p>①~⑤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 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</p> | <p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 할 수 있다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-------------|
| 제13조(폐기물 수집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<u>별 제13조 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·처리에 관한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고 한다)의 부과·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| 제13조(폐기물수집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·징수)① <u>별 제13조 제3항</u> _____ _____ _____ | 제13조 (개정안과 같음) |
| ①. (생략) ②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. | 1. (현행과 같음) 2.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의 _____ _____ |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
| 제17조(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)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·확충·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제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. | 제17조(생활폐기물의 수거능력 보강) ① _____ _____ _____ 개선· 확충·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제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. | 제17조 (개정안과 같음)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
| ③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·장비·시설 등을 개선·확충·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. | ③ _____ _____ 제1항 _____ _____ | |
| 제18조(자체수집·운반·처리자 지정 등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자체수집·운반·처리자(이하 "처리자"라 한다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<u>별 제17조</u>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| 제18조(자체수집운반·처리자 지정 등) ① _____ _____ _____ 벌 제26조 _____ | 제18조 (개정안과 같음) |
| 1-2 (생략) | 1-2 (현행과 같음) |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